

	2008. 7. 30()		
	(368-4413)	02-368-4441	2

: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2008 년 7 월 29 일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의 저자인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환경법률체계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지 정화 및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있어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해 보험사가 리스크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내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연평균 300 건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요청한 배상금액의 9.5%에 불과해 환경소송으로의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을 비롯한 40 개 이상의 법률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정수준의 오염방지 수준에 있을 뿐 오염자 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무적 대책 마련 조향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970 년대부터 오염유발자에게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담시키고 이의 이행을 위한 의무보험(mandatory insurance)등 재무적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리스크가 사적 관리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로 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EU 의 경우 회원국들은 2007. 4.30 일부터 “EU 환경배상책임 지침(EC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을 자국법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호종이나 자연생태계 오염까지를 책임부담 범위로 확장하고 재무적 대책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환경오염리스크가 더 점증하고 국가주도만으로 환경오염관리를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종합적인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마련될 것을 제안했다.

첫째, 미국, 독일 등 EU 국가들처럼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이 적용되는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1995 년 씨프린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책임법의 입법추진이 두 차례 있었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었다. 헌법 제 35 조에서 규정한 환경권을 국민이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진국과 같은 환경책임법을 입법화해야 한다. 환경오염법의 적용대상은 수질, 토지 오염에 한정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염자에게 엄격책임과 연대책임을 부과하며 손해배상이행을 위한 손해배상계약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대상과 배상한도는 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독립적인 환경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 환경오염 리스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국가 들처럼 독립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요율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오염리스크의 광범위성 및 거대성으로 보험회사의 인수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환경보험폴을 도입하여 적절한 위험분산체계를 구비하여 안정적인 보험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인증(ISO 14000 계열)을 받은 기업에게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독일과 같이 기업경영자에게 환경오염리스크를 포함한 경영리스크 관리현황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